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296
------------	-----

제출연월일 : 2020. 10. 29(목)  
발 의 자 : 심현정 대표의원  
찬 성 자 : 이주웅, 장문혁  
박찬원, 지광천  
이명순 의원

##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감사위원수는 6명으로 하되,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2. 제안이유

- 평창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 감 사 계 획

## 1. 활동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시 통제
- 예산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
-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군정사무 개선

## 2.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 집행기관 보고사항 및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

## 3. 활동기간

- 2020년 11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 4. 구성

- 이주웅 의원, 장문혁 의원, 박찬원 의원, 지광천 의원,  
심현정 의원, 이명순 의원

## 5. 운영계획

기 간	내 용	비 고
2020.11.04(수) 제1차 행감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위원장 및 간사 선임</li><li>○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li></ul>	
2020.11.05(목) 제2차 행감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li><li>○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건</li></ul>	
2020.11.26~12.03 (8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행정사무감사 활동</li></ul>	
2020.12.04(금) 제3차 행감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li></ul>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5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